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부 11010-395

시행일자 1994. 4. 24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	시	장
보존	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772-91441		
법무 담당관	하			
법제제장	문			
기안	이종범	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등 2건 발령

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등 2건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예규 제 601 ~ 602 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 1부.
2. 서울특별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추진지침총개정지침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1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등 2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01 ~ 602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상공과장

제목 예규발령 통보

1. 상공 55471-662('95.4.17) 및 상공 55471-658('95.4.15)호와 관련임.
2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등 2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4. 5. /

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01 ~ 602 호(생략).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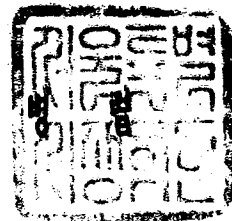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5년 5월 / 일

서울특별시장 최

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요강

=====

제1조(목적)

이 요강은 중소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'자금'이라 한다) 운용조건과 원칙 및 대출취급은행(이하 '취급은행'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등을 정함으로써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'대하'라 함은 서울특별시(이하 '추천기관'이라 한다)가 중소기업은행(이하 '대여기관'이라 한다)에 자금을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'대여'라 함은 대여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'대출'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취급은행)

- ① 자금의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주택은행, 국민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장기신용은행, 시중은행, 지방은행,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축협중앙회로 한다.
- ② 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취급은행은 대여기관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출대상자)

자금의 대출대상자는 추천기관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로 한다.

제5조(용자조건)

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여금리 : 연 7.0 퍼센트
2. 대출금리 : 연 8.0 퍼센트
3. 용자기간 : 4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
4. 대 여 일 : 매월 5일, 10일, 15일, 20일, 25일 및 말일

다만, 대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대여

5. 자금용도 : 운전자금

제6조(용자절차)

- ① 추천기관은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을 확정하여 대여기관 및 취급은행에 통보하며, 취급은행은 채권보전 조치만을 취한후 대출한다. 다만, 신용대출로써 채권보전상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등에는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취급은행은 제1항에 의거 심사한 후 용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여기관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취급은행은 대출대상자에 대하여 추천기관이 추천 통보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출취급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금액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추천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독한 경우에는 연장기한을 대출취급 유효기간으로 하되, 최초 추천 통보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취급은행은 정해진 용자기간(할부금의 상환기일 포함)을 임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.

제7조(차입신청 및 대출실행)

- ① 취급은행은 최초 차입신청전에 대여기관에 제출한 월별차입계획에 따라 실제 대출이 실행될 금액에 대하여 자금차입을 신청한다.
- ② 취급은행은 대여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당일에 대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입일로부터 7일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.
- ③ 취급은행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차입원금과 동 이자를 대여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, 이때 이자계산은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일수에 이 자금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.

제8조(원리금상환등)

- 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연 2회(2월, 8월 또는 5월, 11월의 말일) 균등분할 상환하되 할부기간으로 균등히 분할되지 않는 우수리는 초회할부금에 편입한다.
- ② 자금의 이자는 연 4회(2월, 5월, 8월, 11월의 말일) 후취하며, 용자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원금상환일에 납입한다.
- ③ 자금의 이자계산 기간은 용자일로부터 납입일 전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. 다만, 용자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.
- ④ 원리금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납입한다.

제9조(자금의 기한전회수)

취급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

1. 대여자금중 용자불능자금이 발생하였을 때
2. 용자업체로부터 기입전상황이 있을 때
3. 대출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
4. 대여기관이 자금의 회수조치를 요청한 때
5. 기타 취급은행의 대출관계 제규정을 위반한 때

제10조(대출금 관리)

취급은행은 이 요강 및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특히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리자금 보유금지)

취급은행은 이 자금을 관리자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.

제12조(기타)

- ① 이 요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여기관이 변경하여 통보한 때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.
- ②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요강 및 관계규정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취급은행의 대출관계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